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천하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050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규정 일원화 (천하람의원안)	3

I. 개요

1. 천하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05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천하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0. 30.

(3) 회 부 일 : 2024. 10.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중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 데에 비하여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보다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란 불성실한 과세협력에 대해 형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다른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령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90조제4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하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규정 일원화 (천하람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 에 대한 과태료(\$90) ○ (미신고 및 과소신고)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금액 -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 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의 차이 ○ (출처 미소명 및 거짓소명) 신고의 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 우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예외) 「조세범 처 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 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고 통고대로 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시행일: 이 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천하람 의원안 2024. 10. 30. 제출(의안번호 5050)

☐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벌칙 규정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 과 「조
세범 처벌법」 상 규정된 과태료 및 벌칙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하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소 신고한 금액 (이하 “해당 금액”)의 50억 원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상이한 법률에 그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¹⁾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²⁾

그러나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합범 제한가중 규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 데에 비해,³⁾ 해당 금

1) 「국제조세조정법」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한다.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례적인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벌칙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상응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5049)의 의결을 전제로,⁴⁾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계좌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국제조세조정법」상 과태료 규정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예외를 규정한 현행법 제90조제4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해외 금융계좌신고의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벌칙의 규모에 비례한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하며 특히 해당 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범 처벌법」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벌금 및 징역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제적인 조세회피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입되었음.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고 해외로의 자산 은닉 및 불

4) 동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049)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안은 2024년 10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법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과세 협력 불이행에 수반되는 조세탈루에 비해 탈루 세원의 포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탈루 행위 조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어, 기타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는 과세의무 협력과 차별적인 영향이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 처벌법」의 형벌규정은 국제적인 조세 회피를 통한 기대 이익을 낮추고, 잠재적인 범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탈루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49